

등록번호	재무과- 7469
등록일자	2015. 8. 5.
결재일자	2015. 8. 5.
공개구분	공개

결	주무관	경리팀장	재무과장 (간사)	재정위원장
재			김헌재	
협 조	사무국장 직무대리 (총무과장)			

2015학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5. 7. 29.(수) 14:00							
장 소	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							
안 건	1.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 개정안 2.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							
심의·의결 사항	1.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 개정안 → 조건부 통과 *조건: 14쪽 X. 영역별 평가 및 지급 기준은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·개선한다. 2.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 → 유보							
위원명단	당 연 직	교무처장	최영태		일 반 직	교수	최용용	
		학생처장	최정기			교수	임기건	
		연구처장	송진규	불참		직원	정용석	
		기획조정처장	신윤숙			직원	김봉선	
		사무국장 직무대리	윤상국			학생	정상엽	
		학무본부장	최승현			학생	장민수	
		평의원회부의장	허양일			외부	박승현	불참
						외부	전종현	
	○ 참석현황: 참석(13명), 불참(2명) ※ 배석: 재무과장(간사) 김헌재, 경리팀장 오선진, 담당자 모영채							

■ 회의 내용

1. 개의((開議) 선언 (위원장 14:00)

2. 2015학년도 제1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승인

- 정상엽 위원: 회의록 3쪽 중간부분 ‘위원 전원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’는 표결로 10명이 동의하였으므로 기록이 잘못되었음.
- 위원장: ‘위원 전원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’는 ‘표결에 따라 참석위원 13명 중 10명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’로 수정하겠음.
- 정상엽 위원: 회의록 6쪽 하단에 ‘경리팀장’이 아니라 공식명칭이 ‘재무팀장’이 아닌지 확인 바람.
- 재무과장: 규정에 의한 공식명칭은 없고, ‘재무팀장’과 ‘경리팀장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.
- 정상엽 위원: 제1회 회의에 배석한 기획조정부처장과 재정관리팀장도 회의록에 배석자로 기재가 필요함.
- 재무과장: 배석자를 기록하겠음.
- 정상엽 위원: 제1회 회의록에 간인 또는 간서명이 없고,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1일째에 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임.
- 재무과장: 회의록 공개시한인 1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·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공개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였음.
- 위원장: 회의록 간인 또는 간서명은 지난 회의 중 호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 3인을 호선하여 간인 또는 간서명할 예정이니 호선바람.
- 정용석 위원: 교수, 직원, 학생 위원 중 각 한명씩 간인 또는 간서명하였으면 함.
- 위원장: 추천에 따라 제1회 회의록은 허양일, 정용석, 정상엽 위원이 간인하고, 제2회 회의록은 허양일 위원 대신 최응용 위원이 간인하기로 함.
< 전차 회의록 3쪽 ‘위원 전원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’는 ‘표결에 따라 참석위원 13명 중 10명이 제11조 일부 수정안 승인에 동의’로 수정 통과하고 배석자로 기획조정부처장과 재정관리팀장을 표기하기로 함.>
- 최응용 위원: 정상엽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 회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물음.

- 위원장: 업무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나, 위원의 개인적 녹음은 위원 간 발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추후 업무담당부서에 가서 듣도록 하고 정상업 위원에게 녹음 중지를 요청함.
- 정상업 위원: 거절함.
- 위원장: 5분간 정회를 선언함(14:36)
- 위원장: 회의 재개를 선언(14:45)하고 정상업 위원에게 녹음 중지를 요청함.
- 정상업 위원: 녹음은 중지하겠으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듣고 기록하겠음.

3. 안건 심의

가.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 개정안

- 최영태 위원: 제1회 회의 안건인 교수대상 기준에 더하여, 직원과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 단일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밝힌 후 강의평가 세분화 등 회의자료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함. 향후 세부지침 마련, 전산화 작업추진이 남아있으며 추후 기준 변경 등이 있다면 다시 심의 요청하겠음.
- 정용석 위원: 직원의 비용예산 60억 중 34억만 반영되었는데, 올해 결산액 범위 내에서 차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므로,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부족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, 추경이 안된다면 전용·이용을 통해서라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함. 또한 직원 기준액이 800만원인데 45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물음.
- 최영태 위원: 직원 예산 총액을 60억으로 계산하면 800만원이지만, 현재 성립된 예산은 34억을 기준으로 450만원임. 향후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재정위원회에서 변경예산을 심의하고 비용지급 기준에도 반영할 수 있음.
- 정용석 위원: 7월에 재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혁신지원사업 보고서 제출 관련인데 기준액을 450만원으로 제출하면 추후 인상을 제한 없이 상향 가능한 지 물음.
- 최영태 위원: 교육부 지침을 보면 수정이 가능하고, 지급액에 관해서는 어느 대학도 자신하지 못하며 향후 감사 시 환수 될 수도 있음.
- 최용용 위원: 기준이 통과되면 지켜야 하는데,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비중 및 강의평가 등에 단과대학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. 또한, 직원에 대한 평가는 각 부서 업무단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.
- 최영태 위원: 단과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, 직원의 비용은 본연의 업무 이외의 성과에 대해 지급할 수 있음.
- 최정기 위원: 최용용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부의 기준을

무시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함.

- 윤상국 위원: 직원은 본연의 업무 실적은 제한되며, 부서 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음.
- 최응용 위원: 단과대학의 기준은 본부의 기준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할 수 밖에 없고, 직원 본연의 업무가 성과로 인정 안된다면 본부 직원들은 연구영역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람.
- 허양일 위원: 비용 지급기준이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추후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하고, 교수의 비용은 교무처장이 동의한 것처럼 전년도 기준으로 개인별 90%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며, 직원 예산이 56% 편성 되었다면 선금을 지급하고 총장님과 대학본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.
- 최영태 위원: 교육·연구·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교수에게도 작년 수준으로 지급할 수는 없음.
- 허양일 위원: 위 활동을 하지 않은 극소수 교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대부분의 기준이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요청함.
- 윤상국 위원: 직원의 경우 오늘 기준이 통과되면 다음 주에 계획서를 받고 8월 중순에 선금이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음.
- 전종현 위원: 교육지원비 지표별 비중의 단계적 격차를 5%로 줄이면 차등의 범위도 줄어들 수 있음.
- 위원장: 1차 지급한 후 2차 지급 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람.
- 최영태 위원: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완성해 가고 안전을 통과해 주시기 바람.
- 위원장: (위원들의 동의를 얻어) **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기준 안의 X. 영역별 평가 및 지급 기준은 추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·개선한다는 조건부로 통과함.**

나.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안

- 윤상국 위원: 계약직원을 포함한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은 ‘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제23조제2항에 의거 재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, **전남대학교 대학에 두는 직원 정원에 관한 규정**에 따라 200명으로 총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.
- 허양일 위원: 정원에 대한 단과대학 운용현황 등 보다 상세한 배경설명이

필요하고, 정원 증감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심의해야 하는 사안임.

- 최응용 위원: 기성회직원의 고용승계, 입학사정관 제도 유지 여부, 국고지원금 한정 등 총 정원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.
- 최영태 위원: 총 정원 200명은 정원의 한계선이므로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, 판단을 미룰 만한 성격이 아니고 혁신지원사업 계획을 위해서라도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함.
- 위원장: 대학회계 직원의 총 정원 안건은 추후 전반적인 배경설명을 듣기로 하고 심의를 유보함.

■ 기타 사항

- 위원장과 위원들 모두가 사전에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 사전 배부를 관련 기관·부서에 간곡히 당부함.

■ 폐회 선언 (위원장 16:40)

2015. 7. 29.

기록자: 서기 (경리팀장) 오 선 진

확인자: 간사 (재무과장) 김 현 재

